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목 차



1 전부개정 추진경과 및 제안이유

2 업종공통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3 제조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4 건설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5 기타사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참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변천사

 근로기준법 제정(1953.5.10. 제6장 안전과보건에 규정)

 위험방지, 안전장치, 감독상의 행정조치 등 10개 조문

 28년간 동법으로 시행하다가 산안법 제정 후 분리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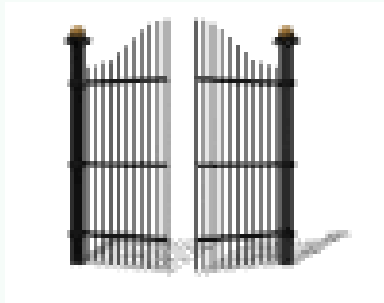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김집의원 외 35인 발의(1981.11.29)

 산업안전보건법 총35차례 개정(1990.1.13. 전부개정)

 90년대 9차례 → 00년대 17차례 → 10년대 9차례 개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2018.12.27) → 공포(2019.1.15)

사어아저보거법 전부개정 추진배경 및 제안이유



추진 배경

산안법 전부개정 추진배경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수 연간 천여명 발생
- 노동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사고+질병) 22조원 규모(2018년도)
- **자연재해 손실액**(17년, 피해액+복구액=6,870억원)의 **32배**(2017재해연보, 안행부)



추진 경과

90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부개정 추진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8.2.9) 前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노사·전문가 등 의견수렴(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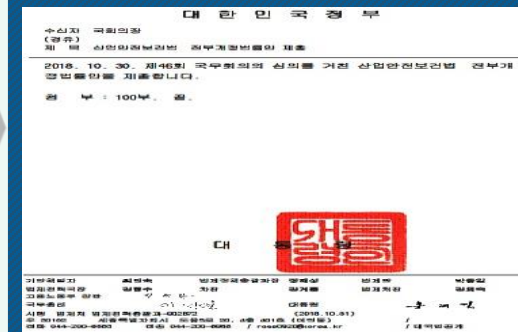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8.2.9) 後

노사·전문가 등 의견수렴(21회), 규제심사(18.7.13), 법제심사(18.10.23)

공청회(18.3.27)



국회제출(1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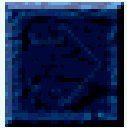


개정안 공포(19.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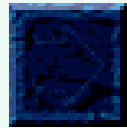


제안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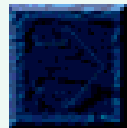
산안법 전부개정안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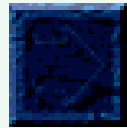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 보호대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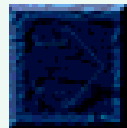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도급작업 등 유해 · 위험작업 도급금지



유해 · 위험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신뢰성 강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체계 개편

산안법 체계 개편사항

-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세분화
-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관리책임자 자격·권한, 건강진단 종류 등)
- 법률 위임근거 명확화 등 법 조문 전면 재배열



체계 개편

산안법 체계 개편사항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장 감독과 명령
제6장의2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개정 전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4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 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개정 후

체계 개편

산안법의 새로운 장·절 체계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장

도급 시 산업
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2절 안전인증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4절 안전검사
- 제5절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 관리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어조 공통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법의 적용대상 확대(시행일 : 2020.1.16)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개정 사유(배경)

-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 등장
-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
-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트럭 기사 등
특고와 플랫폼 이용의 배달종사자 등 법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개정 전(제1조)

이 법은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중략>...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후(제1조)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중략>...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를규정을 통해 집행의 일관성 확보(시행일 : 2020.1.16)

 도급, 발주자, 산업재해 등 개념정의 명확화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중략>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중략>

업종 공통

정의규정 개정(제2조)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적용범위 “사업” 으로 통일(시행일 : 2020.1.16)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 으로 약칭하는 규정 삭제

☞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종속변수

➡ 적용 범위의 원칙을 “사업” 단위로 통일함

■ 국가·자치단체 및 공기업도 법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 삭제

개정 사유(배경)

법 적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사업과 사업장의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용어정리가 필요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법 적용 배제 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사업

-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즉, 상법상의 상행위와 유사한 개념

사업장

-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곳

도급인의 사업장 명확화(시행일 : 2020.1.16)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를 명확히 규정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로 문구 명확화

개정 사유(배경)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장소 확대 필요

업종 공통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제10조)

개정 전(제9조의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중략>...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개정 후(제10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중략>...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적용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업종 공통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신설(제14조)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시행일 : 2021.1.1)

 이사회 승인된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성실히 이행 의무 부과

신설 사유(배경)

- 기업의 안전·보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관심에 크게 의존
- 대표자가 형사책임 회피 상황으로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추구 방지** 필요
-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14조)

-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중략>...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③ ...<중략>...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법령요지 외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의무(시행일 : 2020.1.16)

■ 現 총칙에서 제4장 “유해 · 위험방지조치” 로 조문 이동

■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성

■ 現 시행규칙상의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을 법으로 상향

개정 사유(배경)

사업주의 게시의무 사항이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악하기 곤란하고 중요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하위법령에 규정
(게시 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통지의무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업종 공통

법령요지 등의 게시(제34조)

개정 전(제11조)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개정 후(제34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전(제11조)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이하 중략>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
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규정된 사항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개정 후(제35조)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이하 중략>

1. 좌동
2. 안전보건진단 결과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5. 물질안전보건자료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근로자 참여 규정 상향 등 조문 정리(시행일 : 2020.01.16)

 고시에 규정된 근로자 참여 규정을 법으로 상향

 조문정리: 위험성을 결정하고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개정 사유(배경)

- 위험성을 결정하고 문구에 대한 의미가 모호
- 위험성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선행**하도록 조문 위치 배열

업종 공통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6조)

개정 전(제41조의2)

①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이하 중략>

개정 후(제36조)

①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고...<중략>...

②...<중략>...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하 중략>

업종 공통

안전보건진단 및 진단기관 개정(제47조, 제48조)

- 진단결과 제출의무 등을 법으로 상향(시행일 : 2020.1.16)
- 사업주의 진단의무와 진단기관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구분
- 진단대상 : 추락·붕괴 등 **고위험 사업장**을 법으로 상향
- 진단명령 받은 경우 사업주가 진단을 의뢰토록 법에 규정

개정 사유(배경)

- 진단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포괄위임되어 있어 법률에서 대상 사업장 예측 곤란
- 진단 실시일이 사업주와 진단기관 간 계약에 의해 정해져 진단 결과 **제출 시점이 불명확**

개정 전(제49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이하 중략>

개정 후(제47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 48 조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업종 공통

안전보건진단(제47조)

개정 전(시행규칙 제130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중략>...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47조)

②...<중략>...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종 공통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및 계획서 제출 개정(제49조, 제50조)

 개선계획 대상사업장 범으로 상향 등(시행일 : 2020.1.16)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과 제출 등을 조문 구분

 일정규모 이상의 **직업병 발생 사업장**을 범으로 상향

 개선계획서의 제출과 관련된 위임근거를 법에 규정

개정 사유(배경)

-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이 법 외에 하위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어 한번에 파악이 곤란
- 개선계획서 제출은 법에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제출 등에 관해 법에 위임근거 마련 필요

개정 전(제50조)

- ① …<중략>…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수 있다.
1.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 사업장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② …<중략>…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중략>…

개정 후(제49조)

- ① …<중략>…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수 있다. …<중략>…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중략>
1. 좌동
 2. 좌동
 3. …<중략>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명시(시행일 : 2020.1.16)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합리적 이유 있을 때 대피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개정 사유(배경)

근로자가 작업중지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불이익 조치
우려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규정

업종 공통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개정 전(제26조)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2조)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종 공통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제55조)

 작업중지명령 요건 및 대상의 법적근거 명확히 마련(시행일 : 2020.1.16)

 작업중지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동일작업**

 화재 · 폭발 · 누출, 건축물 붕괴 경우는 **사업장 전체**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제

개정 사유(배경)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작업중지의 범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강제적 성격에 맞게 요건과 해제 절차를 규정할 필요(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종 공통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제55조)

개정 전(제51조)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후(제55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략>... 해당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

② ...<중략>...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중략>...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원인조사는 예방대책 수립 목적(시행일 : 2020.1.16)

 원인조사는 작업중지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

 현장 훼손 외 다른 원인조사 방해 행위도 금지토록 규정

개정 사유(배경)

원인조사와 작업중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원인조사 방해 행위를 현장 훼손만 규정(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종 공통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56조)

개정 전(제26조)

④ ...<중략>...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중략>...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후(제56조)

① ... <중략>...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업종 공통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개정(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강화(시행일 : 2020.1.16)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 중 지배·관리 장소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하위법령인 “안전보건규칙” 을 따르도록 함

개정 사유(배경)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도급인지, 같은 장소에서 작업했는지, 22개 위험발생 장소 여부 등 사안마다 법 적용에 논란 발생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지배관리권 있다면 **도급유형, 위험장소 여부** 등을 **불문**하고 책임 부과타당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해 직접 지시 시 불법파견 소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사항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유해 ·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산재보상정책과에서 법령개정 추진**)

 도급 금지(제58조, 제59조, 제60조)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하청 재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자 재해

 원청 책임(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이 있는 하청 재해

개정 사유(배경)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유해 ·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실적을
원청 또는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필요

업종 공통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개정 전(제29조)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중략>...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략>...

③ ...<중략>...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이하 중략>

개정 후(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업종 공통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개정(제64조)

 안전보건조치 외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규정(시행일 : 2020.1.16)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수급인 근로자 교육 실시 확인

 정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개정 사유(배경)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가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정비하고
실제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은 제125조에 도급인
으로 일원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종 공통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

개정 전(제29조)

②...<중략>...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3. ...<중략>...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이하 중략>...

개정 후(제64조)

①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중략>...이행하여야 한다.

1. ...<중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이하 중략>...

업종 공통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제65조)

 형식적인 정보제공 방지를 위한 보완(시행일 : 2020.1.16)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 의무(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안전작업 수행여부 **도급인이 확인 의무**(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정보 미제공 시 작업 연기 및 계약의 **지체책임 면제 명시**

개정 사유(배경)

- 도급인은수급인 근로자가제공정보에 따른 필요조치를 받고 작업 수행여부를확인할 필요가있는데 법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
- 도급인의 형식적인 정보제공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종 공통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65조)

개정 전(제29조)

- ⑤...<중략>...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중략>...
1. ...<중략>...제제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중략>...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중략>...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중략>...

개정 후(제65조)

- ①...<중략>...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 ③**도급인**은...<중략>...**안전 · 보건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중략>...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업종 공통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개정(제66조)

 시정조치 권한으로 변경(시행일 : 2020.1.16)

 시내 도급시 시정조치와 폭발 등 위험작업 시내외 도급시 시정조치로 구분

 시정조치 의무 → 시정조치 권한(이유: 도급인이 조치의무 부담)

 명령대상을 관계수급인/수급인만으로 규정(수급인 근로자는 제외)

개정 사유(배경)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경우 불법파견 소지 有
-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 시 **이중제재** 가능성(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종 공통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66조)

개정 전(제29조)

⑥···<중략>···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중략>···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후(제66조)

①도급인은···<중략>···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호의 작업을···<중략>···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중략>···

업종 공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개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거 정비(시행일 : 2021.1.16)

 작성자를 양도 · 제공 →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변경

 MSDS 기재 구성성분 : 유해 · 위험한 화학물질(국제기준과 동일)

 제제 → 혼합물,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제품명으로 변경

개정 사유(배경)

- 제조 · 수입하여 직접 취급 시 MSDS작성의무가 제외
 - MSDS기재 구성성분은 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고 수입 화학제품은 국외 제조사가 제공한 MSDS에 미분류 물질 미기재된 경우 관련 정보 확보 곤란
- (MSDS 제출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종 공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개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부제출 의무(시행일 : 2021.1.16)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MSDS 제출

 기재대상 제외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정보 장관에게 제출

 수입자가 미분류 물질 확인서 제출 시 별도 장관제출 면제

개정 사유(배경)

- MSDS를 양도·제공 받는자에게만 제공하므로 정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이 곤란
- 업무연관성 규명 등을 위해 MSDS 필요한 경우 거부하거나 휴 · 폐업 시 확보 곤란

(구성성분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종 공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개정 전(제41조)

①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략>... 양도하거나 제 공
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 공
받는 자에게 ...<중략>... 제 공
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중략>...

개정 후(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 합 물 로 서 ...<중략>... 제 조
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중략>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략>...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중략>...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110조)

② ...<중략>...유해인자의 분류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략>...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국외제조자로부터 ...<중략>...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업종 공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개정(제112조)

 정보 비공개 시 사전승인 근거 마련(시행일 : 2021.1.16)

 명칭 및 함유량 비공개 필요성 등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비공개 정보 요구권자로 역학조사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 추가

 사전승인 유효기간 5년(연장승인 유효기간도 동일)

개정 사유(배경)

영업비밀 기재 남용(09년 45.5% → 14년 67.4%)으로 노동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직업병 발생 위험이 상승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 등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자회사 백혈병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개정 전(제41조)

⑪...<중략>...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 등...<중략>...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략>...

개정 후(제112조)

①...<중략>...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중략>...대체할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다.
...<중략>...
⑩...<중략>...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역학조사...<중략>...기관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종 공통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신설(제113조)

■ 국외제조자 보호장치 신설(시행일 : 2021.1.16)

-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MSDS, 구성성분 정보, 비공개 정보 승인심사 등 필요자료는 국내수입자 같음 가능자 선임하여 제출
- 선임된 자가 제출된 MSDS를 해당물질 수입자에게 제공

신설 사유(배경)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제품복제**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판매중단 시 제품생산 차질 등 사회적 손실 동반 우려
(국외제조자 거짓 수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중략>···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중략>···~~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가**임하여···<중략>···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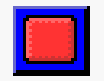
1. ···<중략>···MSDS의 **작성 ·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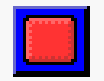
2. ···<중략>···**확인서류의 제출**

② ···<중략>···~~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 ···<중략>···

③ ···<중략>···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의무 명확성 보완(시행일 : 2020.1.16)

 작업환경측정 의무와 작업환경측정기관 관한 사항 분리 규정

 수급인의 작업장의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개정 사유(배경)

작업환경측정의무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복잡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

개정 전(제42조)

① ...<중략>...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후(제125조)

②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략>...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업종 공통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 개정(제167조)

■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강화(시행일 : 2020.1.16)

■ 사업주 및 도급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현행 도급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이내 반복위반 시 형의 1/2까지 가중(신설)

개정 사유(배경)

- 중대재해 관련 법원에서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고, 사망사고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서 발생
- 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안: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

업종 공통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및 도급인 벌칙(제167조)

개정 전(제66조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제167조)

-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중략>...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일 : 2020.1.16)

■ 도급인: 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사유(배경)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이 일반화되고 작업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 강화 필요
- 개정법률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조치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위반 시 제재도 강화 필요

(정부안: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전(제68조)

…<중략>…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9조제3항, …<중략>…

개정 후(제169조)

…<중략>…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략>…제63조

 **법인 벌금액 10억원 이하로 상향**(시행일 : 2020.1.16)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적용**

 **법인(원 · 하청) 처벌수준 강화**(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개정 사유(배경)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 자산의 규모가 상당할수록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벌금액이 소액**이라 형벌효과가 크지 않아 범죄억제의 효과가 미미

개정 전(제71조)

…<중략>…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이하 중략>…

개정 후(제173조)

…<중략>…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략>…

1. 제167조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 해당조문의 벌금형

■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병과 가능(시행일 : 2020.1.16)

-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 이나 벌금형 선고의 경우(6개월 이내 집행)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신설 사유(배경)

- 현행 형법은 형 집행유예 선고시에만 수강명령 가능하여 산안법 위반자에게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시 수강명령 불가
- 산업재해의 피해,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 등 산재 **예방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강명령 신설 필요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174조)

① ...<중략>...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형의집행을유예...<중략>...집행 유예기간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중략>...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중략>...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제조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개정(제44조, 제45조,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해 쉽게 정비(시행일 2020.01.1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공정안전 보고서 이행 등 단계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재배치

개정 사유(배경)

현행법(제49조의2)은 한 개의 조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제44조)

개정 전(제49조의2)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략>...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략>...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중략>...

개정 후(제44조)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중략>...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중략>...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이하 중략>...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제45조)

개정 전(제49조의2)

③...<중략>...공정안전보고서를
...<중략>...심사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중략>... 공정 안전 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중략>...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⑤ 사 업 주 는 ...< 중 략 >...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갇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후(제45조)

①...<중략>...공정안전보고서를
...<중략>...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중략>...공정안전 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중략>...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갇추어 두어야 한다.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제46조)

개정 전(제49조의2)

- ⑥...<중략>...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⑦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을 지켜야 한다.
- ⑧ <생략>
- ⑨...<중략>...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후(제46조)

- ①사업주와 근로자는...<중략>...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②...<중략>...공정안전 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중략>...고용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생략>
- ④...<중략>...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조업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개정(제58조)

 유해 · 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시행일 : 2020. 1.16)

 도급작업, 수은 · 납 · 카드뮴의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 · 사용 작업(베릴륨, 비소, 디클로로벤지딘 등 12종)

 전문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장관 승인 필요) or 일시 · 간헐작업 제외

개정 사유(배경)

유해 ·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을 허용시 수급인의 **작업환경**
등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 보건관리 지속 곤란으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필요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조업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개정 전(제28조)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중략>...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후(제58조)

- ①...<중략>...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이하 중략>...
 - ②...<중략>...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중략>...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중략>...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조업

도급의 승인 개정(제59조)

- 도급인가 대상확대 및 도급승인으로 변경(시행일 : 2020.1.16)
- 인가: 행정청이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증하여 효력 완성
- 승인: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처분
- 지속적인 이행체계까지 확인(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 취급작업 대상)

개정 사유(배경)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등 작업 시 질식, 중독 사고를 유발하고 장시간 화학물질 노출로 직업병을 유발

※ (예시)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제조업

도급의 승인(제59조)

개정 전(제28조)

②...<중략>...도급을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중략>...인가를 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안전보건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9조)

①...<중략>...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중략>...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중략>...

제조업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개정(제60조)

 승인받고 도급한 작업 하도급 금지(시행일 : 2020.1.16)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

개정 사유(배경)

- 다단계 하도급 시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짐**
- 도급 승인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승인되었고, 이를 다시 도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불가능

제조업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개정 전(제28조)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중략>...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후(제60조)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중략>...연장승인 또는 변경
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조업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신설(제61조)

 적격 수급인과 도급계약 체결의무(시행일 : 2020.1.16)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이행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신설 사유(배경)

- 최근 비용절감, 위험의 외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급 확산이 일반적인 상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 확보가 곤란한 영세·취약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도급받는 등 수급인 소속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제조업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조업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신설(제161조)

 도급금지,도급승인,재하도급금지 위반시(시행일 : 2020.1.16)

 법정 한도액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

 고려사항(도급계약금액, 안전보건조치 이행 노력도, 재해발생 여부 등)

 도급인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신설 사유(배경)

효율적인 업무수행 목적보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가 도급금지 등의 취지에 부합

제조업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제161조)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161조)

① ...<중략>...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급금지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중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중략>...재하도급한 경우

② ...<중략>...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중략>...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중략>...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건설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건설업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제67조)

 발주자의 예방조치 의무 부과(시행일 : 2020.1.16)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시공사 제공

 (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신설 사유(배경)

발주자는 공사계획 · 설계 · 시공 등 **건설사업** **소 과정**에서 공사
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려 필요(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67조)

- ① ...<중략>...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중략>...
1. 건설공사 **계획**단계...<중략>
 2. 건설공사 **설계**단계...<중략>
 3. 건설공사 **시공**단계...<중략>
- ...<이하 중략>...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업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개정(제70조)

■ 관계수급인도 공사기간 연장 요청(시행일 : 2020.1.16)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 발주자 or 건설공사도급인

■ 그의 수급인 → 건설공사도급인 or 관계수급인으로 명확화

개정 사유(배경)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수급인” 이 지칭하는 자가 불분명(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제70조)

개정 전(제29조의4)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중략>...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략>...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개정 후(제70조)

- ① **건설공사발주자**는...<중략>...
 1. ...<중략>...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중략>...
-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중략>...**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개정(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명확화(시행일 : 2020.1.16)

 건설공사발주자: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도급인: 사업계획 수립 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제외)

 선박 건조 ·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사업계획 수립 시

개정 사유(배경)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고 선박
건조 · 수리업종에 대해 별도 규정하여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제72조)

개정 전(제30조)

- ①...<중략>...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중략>...
1. ...<중략>...
 2. 도급하는 자의...<중략>...

개정 후(제72조)

-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중략>
-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중략>...**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개정(제73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시행일 : 2020.1.16)

 건설재해예방지도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분리 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도를 받도록 규정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개정 사유(배경)

일정한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제73조)

개정 전(제30조의2)

①...<중략>...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중략>...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후(제73조)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
공사를 하는 동안**...<중략>...
지도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제76조)

 타워크레인 등 원청의 안전조치 강화(시행일 : 2020.1.16)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작동되거나 설치·해체·조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동 작업 직접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유해·위험방지 조치 **의무화**

신설 사유(배경)

T/C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하므로 원청에서 소 과정에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할 필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제76조)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76조)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중략>...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업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등록 신설(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등록제 도입(시행일 : 2020.1.16)

 등록한 자가 설치 · 해체작업 하도록 의무화



신설 사유(배경)

임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하여
작업자의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절차를 미준수하는 상황

(미등록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등록자 작업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업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등록 등(제82조)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82조)

-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중략>...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략>... 등록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기타사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기타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신설(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근거 마련(시행일 : 2020.1.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의무 부과

신설 사유(배경)

비용절감 등 비전형 고용형태 확산으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지위, 경제적 종속성(캐디,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별도의 보호 필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77조)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중략>...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입자해 예방**을 위하여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중략>...**안전및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사업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제78조)

 이륜자동차 종사자 보호근거 마련(시행일 : 2020.1.16)

 중개하는 자의 이륜자동차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예시) 과속배달(배달시간 제한) 금지 등

신설 사유(배경)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음식 · 숙박업
사망사고자의 대부분이 이륜자동차 사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78조)

...<중략>...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중략>...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사업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제79조)

 가맹본부 안전 · 보건조치 의무 신설(시행일 : 2020.1.16)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프로그램 마련 · 시행

 가맹본부가 공급 · 설치하는 설비 · 기계 등 안전보건정보 제공

신설 사유(배경)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고 설비 · 기계
· 원자재 등 **위험도 본부에서 제공**하므로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역할이 중요(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사업

가맹본부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제79조)

개정 전

<신설>

개정 후(제79조)

①...<중략>...가맹본부는...<중략>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중략>...공급하는 설비
·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중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참고자료

산안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일정(안)



노·사·학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3월)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3월 말경)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5월~12월)



공포 및 시행(2020.1.16)



생명존중 안전일터 조성!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